

【의안번호 제272호】

#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2. 16. 노미경 의원
- 나. 의안회부 : 2024. 2. 26.
- 다. 집행부 검토의견 회신: 2024. 2. 6. / 보건과(원안 동의)
- 라. 조례안 예고 : 2024. 2. 28. ~ 3. 4. / 의견없음

## 2. 개정 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업무위탁 범위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 나. 집행부 검토의견: 원안 동의

- 상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음

### 다. 조례안예고: 의견 없음

## 6. 검토의견

### □ 조례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 조례개정안 내용 검토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재정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제4조의 본문은 **안 제4조제1항**으로 하고,
  - **안 제4조제2항**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

- 안 제1조는 띄어쓰기 정비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약칭 추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안 제2조제3호는 “호스피스대상환자”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호스피스대상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를 말한다.

- 안 제3조는 제목 “군수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를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로,

“말기환자 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수정하였음.

- 안 제4조제1항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수정함.

- 안 제5조는 제목 “위탁 등”을 “위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제4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사업”을 “업무”로 변경하였음.

- 안 제6조는 제목 “비밀의 유지”를 “비밀유지 의무”로 수정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음.
- 안 제7조(시행규칙)는 일반적 시행규칙 위임 조항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음.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발췌서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일반적 위임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위임명령인 대통령령을,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집행명령인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sup>29)</sup>

29) 현행법에 남아 있는 이러한 일반적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항은 법령심사 과정에서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주군민이 건강하고 질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및 문화를 형성하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관련 법령 발췌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가. 삭제 <2018. 3. 27.>
  - 나. 삭제 <2018. 3. 27.>
  - 다. 삭제 <2018. 3. 27.>
  - 라. 삭제 <2018. 3. 27.>
  - 마. 삭제 <2018. 3. 27.>

...중략...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